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13차) 요약서

2019. 04

 서울주택도시공사

목 차

I. 위치도	1
II. 사업의 개요	1
III. 추진일정 및 계획	2
IV. 토지이용계획	3
V. 주요 변경사항	7

I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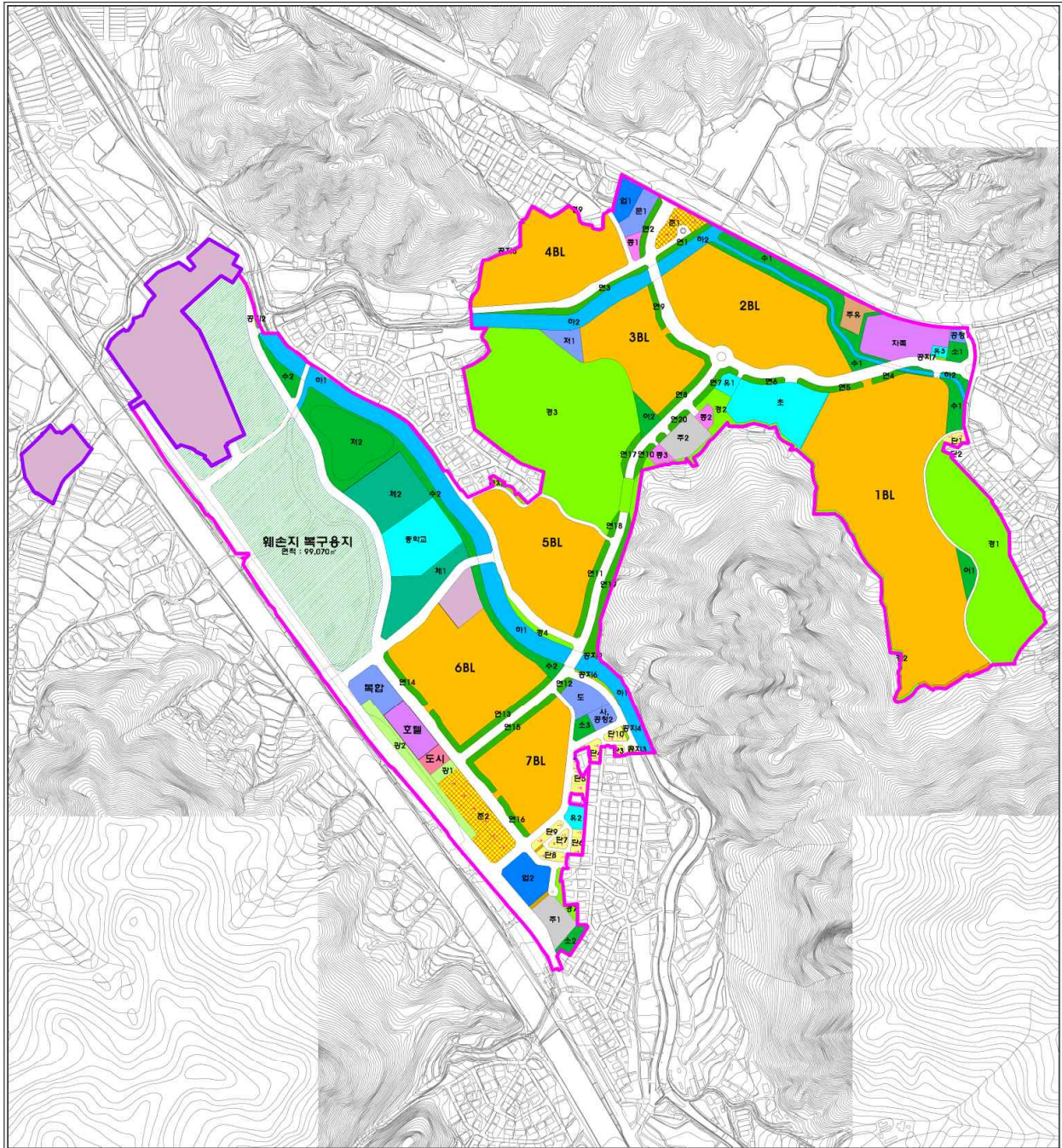
II

사업개요

- 사업명 :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일원
- 면적 : (기정) 811,615㎡ , (변경) 811,613.2㎡
- 인구/주택 : 12,119인, 건설호수 : 4,629세대 (공공주택 : 3,608호)
- 사업비 : 10,280억원
- 사업기간 : (1공구)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3일) ~ 2019년 12월 31일
(2공구)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3일) ~ 2019년 12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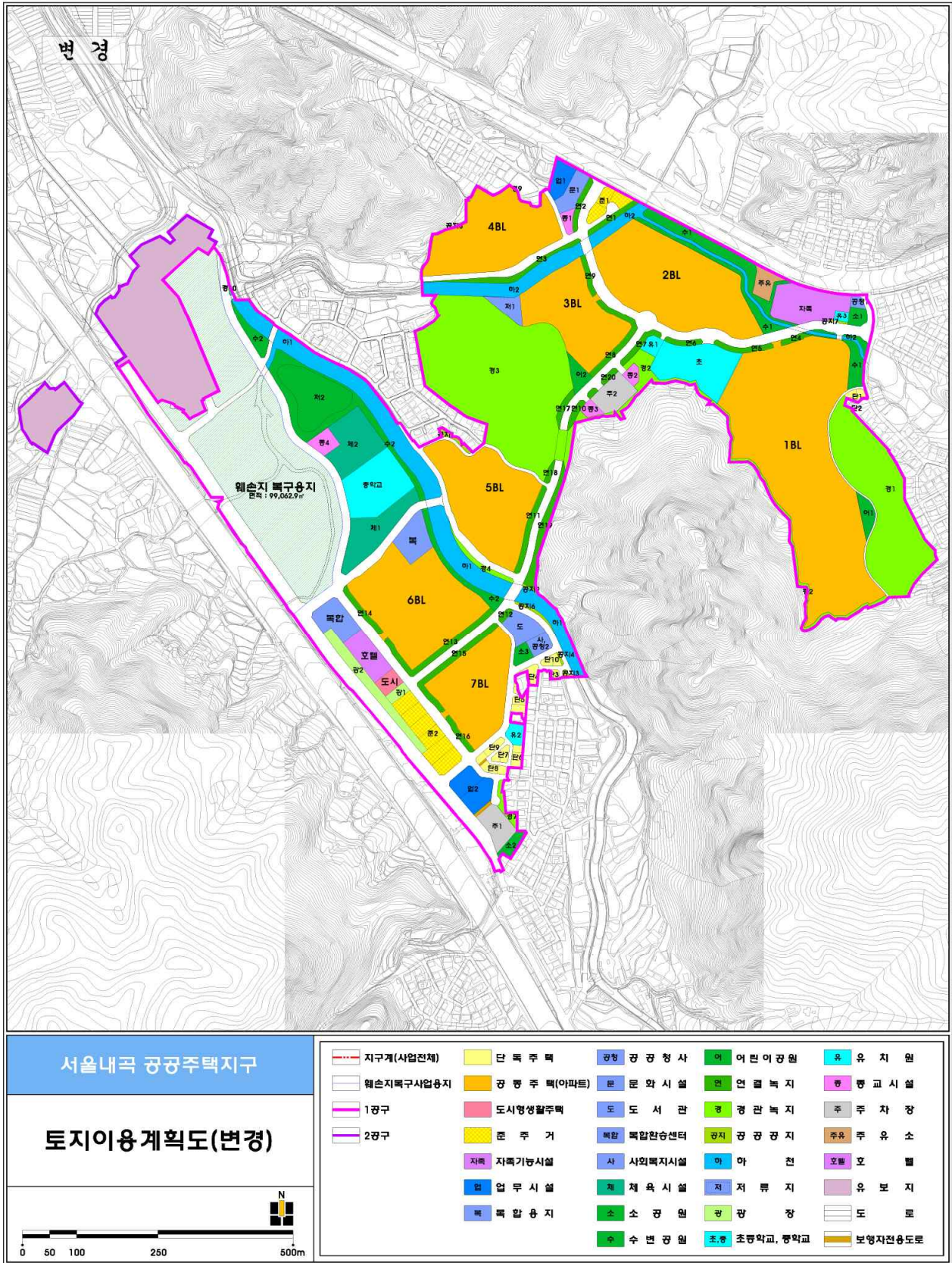
- 2009. 12. 03 :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37호)
- 면 적 : 769천㎡
- 2010. 03. 11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훼손지 복구)
- 2010. 04. 08 :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 2010. 04. 27 :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1차)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1호) - 면 적 : 769천㎡
- 2010. 12. 01 :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68호) - 면 적 : 769천㎡
- 2011. 02. 24 :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3호) - 면 적 : 819천㎡
- 2011. 12. 12 :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65호) - 면 적 : 819천㎡
- 2012. 12. 28 :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60호) - 면 적 : 812천㎡
- 2013. 06. 25 :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44호) - 면 적 : 812천㎡
- 2014. 06. 26 :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80호) - 면 적 : 812천㎡
- 2014. 12. 17 :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05호) - 면 적 : 812천㎡
- 2016. 4. 6 :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 2016. 6. 15 :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4호) - 면 적 : 812천㎡
- 2017. 1. 4 :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9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85호) - 면 적 : 812천㎡
- 2017. 8. 30 :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0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68호) - 면 적 : 812천㎡
- 2017. 12. 26 :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78호) - 면 적 : 812천㎡
- 2018. 12. 28 :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87호) - 면 적 : 812천㎡

토지이용계획도 (기정)



<p>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p> <p>토지이용계획도</p> <p>0 50 100 250 500m</p>		<p>지구계(사업전체)</p> <p>웨슬리지복구사업용지</p> <p>1공구</p> <p>2공구</p>	<p>단독주택</p> <p>공동주택(아파트)</p> <p>도시형생활주택</p> <p>분주거</p> <p>자택</p> <p>자족기능시설</p> <p>업무시설</p>	<p>공영 공공청사</p> <p>문화시설</p> <p>도서관</p> <p>복합복합문화센터</p> <p>사회복지시설</p> <p>체육시설</p> <p>소공원</p> <p>수변공원</p>	<p>어린이공원</p> <p>연결녹지</p> <p>경관녹지</p> <p>공공공지</p> <p>아천</p> <p>저류지</p> <p>광장</p> <p>초등학교, 중학교</p>	<p>유치원</p> <p>종교시설</p> <p>주차장</p> <p>주유소</p> <p>오물</p> <p>유보지</p> <p>도로</p> <p>보행자전용도로</p>
--	--	--	--	--	--	--

토지이용계획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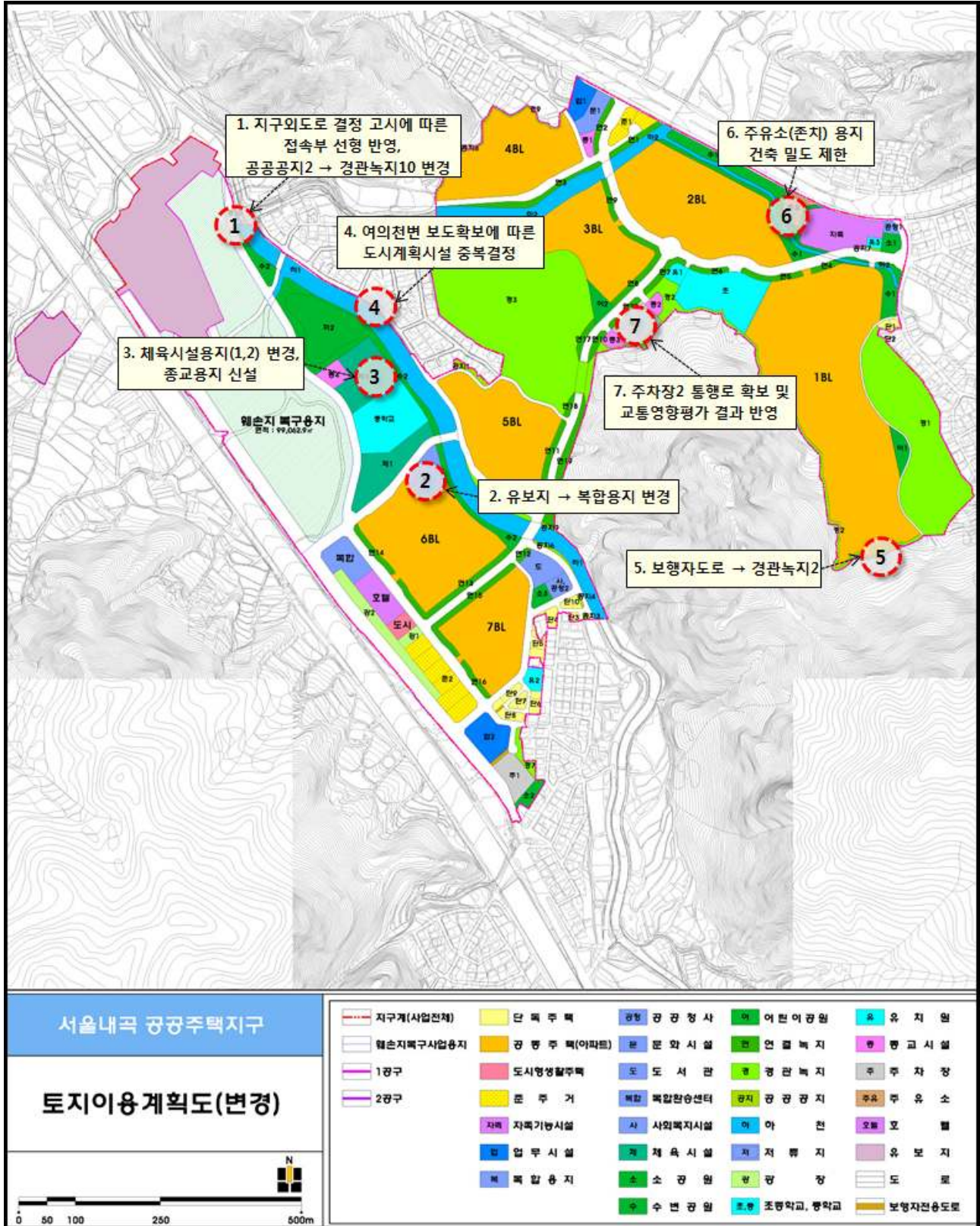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표 (기정)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전체	1공구	2공구	전체비	구분별비		
총계		811,615	761,252	50,363	100.0	-		
계		712,545	662,182	50,363	87.8	100.0		
소계		254,939	254,939	-	31.4	35.8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 건설용지	6,472	6,472	-	0.8	0.9		
	공동주택 건설용지	248,467	248,467	-	30.6	34.9		
소계		457,606	407,243	50,363	56.4	64.2		
도시 시설 용지	도시형생활주택용지	1,330	1,330	-	0.2	0.2	· 행복주택	
	소계	31,466	31,466	-	4.0	4.4		
	준주거용지	9,777	9,777	-	1.2	1.4		
	업무시설용지	6,502	6,502	-	0.8	0.9		
	자족기능시설	8,127	8,127	-	1.0	1.1	· 1개소	
	공공청사	497	497	-	0.1	0.1	· 2개소 · 중복면적(사회복지시설1,322㎡) 미포함	
	문화시설	2,338	2,338	-	0.3	0.3	· 1개소	
	도서관	2,903	2,903	-	0.4	0.4	· 1개소	
	사회복지시설	1,322	1,322	-	0.2	0.2	· 1개소 · 중복면적(공공청사 1,322㎡) 포함	
	소계	217,638	217,638	-	26.8	30.5		
	소공원	3,303	3,303	-	0.4	0.5	· 3개소	
	수변공원	34,297	34,297	-	4.2	4.8	· 2개소 · 중복면적(저류지 9,420㎡)포함	
	어린이공원	3,024	3,024	-	0.4	0.4	· 2개소	
	경관녹지	102,648	102,648	-	12.7	14.4	· 6개소(생태통로 1,008㎡)포함	
연결녹지	25,471	25,471	-	3.1	3.5	· 20개소		
공공공지	2,177	2,177	-	0.3	0.3	· 8개소		
하천	39,189	39,189	-	4.8	5.5	· 여의천, 신원천 · 중복면적(도로 2,106㎡)미포함		
저류지	2,000	2,000	-	0.2	0.3	· 2개소 · 중복면적(수변공원 9,420㎡)미포함		
광장	5,529	5,529	-	0.7	0.8	· 2개소		
소계	24,360	24,360	-	3.0	3.4			
교육 시설	유치원	2,736	2,736	-	0.3	0.4	· 3개소	
	초등학교	11,000	11,000	-	1.4	1.5	· 1개소	
	중학교	10,624	10,624	-	1.3	1.5	· 1개소	
소계	91,571	91,571	-	11.2	12.8			
도로	일반도로	90,540	90,540	-	11.1	12.7	· 중복면적(하천 2,106㎡)포함 · 중복면적(생태통로 1,008㎡)미포함	
	보행자전용도로	1,031	1,031	-	0.1	0.1	· 10m미만 보행자도로	
복합환승센터	4,071	4,071	-	0.5	0.6			
체육시설	17,571	17,571	-	2.2	2.5	· 2개소		
종교시설	2,400	2,400	-	0.3	0.3	· 3개소		
주차장	6,869	6,869	-	0.8	1.0	· 2개소(노외주차장)		
주유소	1,967	1,967	-	0.2	0.3	· 1개소		
호텔	4,000	4,000	-	0.5	0.6	· 1개소		
유보지	54,363	4,000	50,363	6.7	7.6			
계		99,070	99,070	-	12.2	100.0	· 15.0% (GB면적 대비)	
훼손지 복구 용지	공시 용지	공원 녹지	소계	83,470	83,470	-	10.3	84.3
			수변공원	76,144	76,144	-	9.4	76.9
			경관녹지	3,236	3,236	-	0.4	3.3
			하천	4,090	4,090	-	0.5	4.1
	도로	15,600	15,600	-	1.9	15.7		

토지이용계획표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전체 대비	구분별 대비				
		전체	1공구	2공구						
총계	811,615	811,613.2	761,250.0	50,363.2	100.0	-				
계	712,545	712,550.3	662,187.1	50,363.2	87.8	100.0				
주건설지	254,939	254,907.0	254,907.0	-	31.4	35.8				
주건설지	소계									
주건설지	단독주택용지	6,472	6,477.4	6,477.4	-	0.8	0.9			
주건설지	공동주택용지	248,467	248,429.6	248,429.6	-	30.6	34.9			
주건설지	소계	457,606	457,643.3	407,280.1	50,363.2	56.4	64.2			
도시형생활주거용지	도시형생활주거용지	1,330	1,354.0	1,354.0	-	0.2	0.2	·행복주택		
	소계	31,466	31,436.6	31,436.6	-	3.9	4.4			
	주거용지	준주거용지	9,777	9,750.4	9,750.4	-	1.2	1.4		
	주거용지	업무시설용지	6,502	6,491.7	6,491.7	-	0.8	0.9		
	주거용지	자족기능시설	8,127	8,111.3	8,111.3	-	1.0	1.1	·1개소	
	주거용지	공공청사	497	530.0	530.0	-	0.1	0.1	·2개소 ·중복면적(사회복지시설1,311.4㎡) 미포함	
	주거용지	문화시설	2,338	2,332.9	2,332.9	-	0.3	0.3	·1개소	
	주거용지	도서관	2,903	2,908.9	2,908.9	-	0.3	0.4	·1개소	
	주거용지	사회복지시설	1,322	1,311.4	1,311.4	-	0.2	0.2	·1개소 ·중복면적(공공청사2 1,311.4㎡) 포함	
	주거용지	소계	217,638	218,831.5	218,831.5	-	26.9	30.6		
	주거용지	소공원	3,303	3,293.1	3,293.1	-	0.4	0.5	·3개소	
	주거용지	수변공원	34,297	33,049.3	33,049.3	-	4.1	4.6	·2개소 ·중복면적(저류지 9,421.7㎡) 포함	
	주거용지	어린이공원	3,024	3,087.9	3,087.9	-	0.4	0.4	·2개소	
	주거용지	경관녹지	102,648	103,586.2	103,586.2	-	12.7	14.4	·7개소(생태통로 989.3㎡포함)	
	공원녹지	공원녹지	연결녹지	25,471	25,230.3	25,230.3	-	3.1	3.5	·20개소
공원녹지		공공공지	2,177	2,139.3	2,139.3	-	0.3	0.3	·7개소	
공원녹지		하천	39,189	40,939.4	40,939.4	-	5.0	5.8	·여의천, 신원천 ·중복면적(도로 2,412.1㎡)미포함, (도로 1,351.7㎡)포함	
공원녹지		저류지	2,000	1,972.7	1,972.7	-	0.2	0.3	·2개소 ·중복면적 (수변공원2 9,421.7㎡) 미포함	
공원녹지		광장	5,529	5,533.3	5,533.3	-	0.7	0.8	·2개소	
공원녹지		소계	24,360	24,355.0	24,355.0	-	3.0	3.4		
교육시설		교육시설	유치원	2,736	2,725.0	2,725.0	-	0.3	0.4	·3개소
		교육시설	초등학교	11,000	11,003.2	11,003.2	-	1.4	1.5	·1개소
		교육시설	중학교	10,624	10,626.8	10,626.8	-	1.3	1.5	·1개소
도로		도로	소계	91,571	90,426.6	90,426.6	-	11.2	12.7	
	도로	일반도로	90,540	90,127.0	90,127.0	-	11.1	12.6	·중복면적(하천 2,412.1㎡)포함, (하천 1,351.7㎡) 미포함 ·중복면적(생태통로 989.3㎡) 미포함	
복합용지	복합용지	보행자전용도로	1,031	299.6	299.6	-	0.1	0.1	·10m미만 보행자도로	
	복합용지	복합환승센터	4,071	4,048.1	4,048.1	-	0.5	0.6		
	복합용지	복합용지	-	4,026.5	4,026.5	-	0.5	0.5	·1개소	
	복합용지	체육시설	17,571	15,924.3	15,924.3	-	2.0	2.2	·2개소	
	복합용지	종교시설	2,400	4,052.5	4,052.5	-	0.5	0.6	·4개소	
	복합용지	주차장	6,869	6,868.9	6,868.9	-	0.8	1.0	·2개소(노외주차장)	
	복합용지	주유소	1,967	1,967.9	1,967.9	-	0.2	0.3	·1개소	
	복합용지	호텔	4,000	3,988.3	3,988.3	-	0.5	0.6	·1개소	
	복합용지	유보지	54,363	50,363.2	-	50,363.2	6.2	7.1		
	복합용지	소계	99,070	99,062.9	99,062.9	-	12.2	100.0	·15.0%(GB면적 대비)	
훼손지	공시용지	공원녹지	수변공원	83,470	83,203.7	83,203.7	-	10.3	84.0	
			경관지	76,144	75,888.3	75,888.3	-	9.4	76.6	
			관지	3,236	3,227.0	3,227.0	-	0.4	3.3	
			하천	4,090	4,088.4	4,088.4	-	0.5	4.1	·원지천
			도로	15,600	15,859.2	15,859.2	-	1.9	16.0	

변경사항



□ 지구계획 변경 주요 변경내용 및 사유

① 지구외도로 결정 고시 반영 및 공공공지2 토지이용계획 변경

- 서초구 고시 제2018-256호(2018.11.08.) 및 서울시 고시 제2018-424호(2018.12.27.)에 의거하여 도시관리 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내국 공공주택지구 지구외도로 선형 반영을 위한 지구계획 변경
- 현장여건 상 여의천변에 위치한 공공공지2가 하천 경사지에 위치하여 설치 불가함에 따라 도시 경관의 확보 및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경관녹지10으로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토지이용 계획 변경(안)			훼손지 복구용지 면적변경 없음 (공원→도로, 221㎡)
변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변공원2 : 22,443㎡ • 수변공원7 : 21,363㎡ • 하천1 : 25,840㎡ • 공공공지2 :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변공원2 : 21,165.1㎡ (감1,277.9㎡) • 수변공원7 : 21,123.8㎡ (감 239.2㎡) • 하천1 : 27,651.2㎡ (증 1,811.2㎡) • 경관녹지10 : 39.1㎡ (증 39.1㎡) 	지적확정 측량결과 반영포함

② 유보지 변경

- 내국지구 공구분할에 따른 부분준공을 위해 유보지(6BL측)를 주민생활 편의시설, 업무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용도로 활용토록 복합용지로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토지이용 계획 변경(안)			
변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지 : 4,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용지 : 4,026.5㎡ (증 26.5㎡) •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적확정 측량결과 반영포함

■ 지구단위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유보지	-		
(변경) 복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건축연면적의 20%이내에 한함(단,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고시원,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 시 관련 법률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능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5층이하	

■ 공급방식

구분	공급용도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비고
(기정)	유보지	-	-	-
(변경)	복합용지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③ 체육시설용지 변경 및 종교시설용지 신설

- 체육시설용지 공급대상자(국가·지자체)의 용지활용계획이 없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폐지하고, 용지 활용도를 감안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공급대상자 확대 변경
 - 자연녹지지역(건폐율20%, 용적률50%) → 제1종일반주거지역(건폐율60%, 용적률150%)
- 민원 등에 의한 요구시설로써 주거지, 학교 인근 입지임을 고려한 종교시설용지 신설 부분 용도지역 변경
 - 자연녹지지역(건폐율20%, 용적률50%) → 제2종일반주거지역(건폐율60%, 용적률200%)

구분	기정	변경	비고
토지이용 계획 변경(안)			
변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1 : 7,671㎡ - 자연녹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1 : 7,667.3㎡ (감3.7㎡)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적확정 측량결과 반영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2 : 9,900㎡ - 자연녹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2 : 8,257.0㎡ (감1,643.0㎡)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종교시설4 : 1,650.0㎡ (증1,65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체육시설 1,2		-	
(변경) 체육시설 1,2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및 부속용도(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13호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건축연면적의 20%이내에 한함(단, 공연장,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고시원,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와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이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변경) 종교시설 4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한하며, 건축물 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5층이하	

■ 공급방식

구 분	공급용도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비고
(기정)	체육시설1,2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변경)	체육시설1,2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추가)
	종교시설4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추가)

4 여의천변 보도 확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천1) 중복 결정

- 여의천변 상부 보도확보 부분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천1) 중복 결정
 - 종로 3-E호선 : (기정) L = 70m, B = 12m, (변경) L = 70m, B = 12 ~ 14m
 - 종로 3-F호선 : (기정) L = 310m, B = 12m, (변경) L = 310m, B = 13m
 - 소로 2-C호선 → 종로 3-G : (기정) L = 153m, B = 8m, (변경) L = 153m, B = 12m



구분	기정	변경	비고
토지이용 계획 변경(안)			
변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1 : 25,8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1 : 27,651.2㎡ (증 1,811.2㎡) • 도로 중복결정면적 : 1,351.7㎡ 	지적확정 측량결과 반영포함

○ 현장사진(여의천변 보도)



5 1BL 인근 보행자도로 토지이용계획 변경

- 당초 민원에 의해 1BL 인근 계획되어 있는 보행자도로는 현장여건상 1BL 단지 경계 옹벽 상단에 위치하여 시공성 저하 및 구조적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어 보행자도로를 경관녹지로 변경하고자 함 (당초 민원인 도로개설 철회 확인서 접수 완료)

구분	기정	변경	비고
토지이용 계획 변경(안)			
변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녹지2 : 6,965㎡ • 보행자도로 : 7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녹지2 : 7,955.4㎡ (증990.4㎡) 	지적확정 측량결과 반영포함

6 주유소(존치) 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 현재 운영중인 내곡지구 내 주유소(GS칼텍스)는 존치시설로써, 내곡지구내 편입되면서 GB해제 및 당초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국토부로부터 “GB 공공주택지구 내 존치 처리 철저 시행” 요청에 근거, 건폐율을 조정(40%→28%)하여 존치건축물에 대한 특혜 소지를 방지하고자 함

구분	계획내용		비고
주유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기정) • 40% 이하	
		(변경) • 28% 이하 (현재 27.15%)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2층 이하		

7 주차장2 용지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 당초 내곡지구 인근에 위치한 약초재배지 진출입로 개설 요청 민원을 해결하고자 주차장2용지 지구단위계획상 공공보행통로를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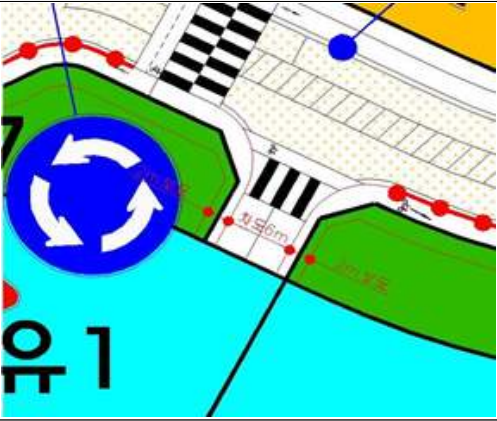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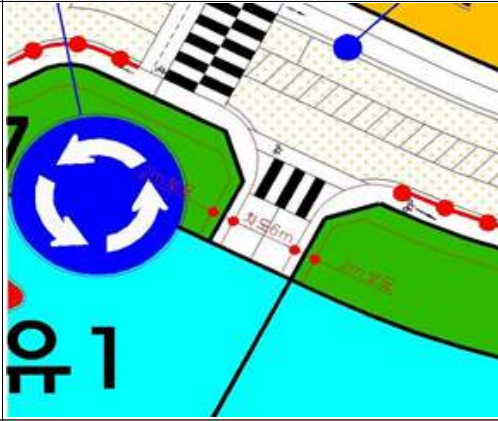
구분	기정	변경	비고
토지이용 계획 변경(안)			

- 주차장전용건축물(복합시설) 건설공사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서초구)에 따라 주차장2용지 차량진출입구 위치 및 도로폭 조정(B=9m→B=13.8m)을 반영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토지이용 계획 변경(안)			
변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녹지20 : 678㎡ • 도 로 : 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녹지20 : 624.3㎡ (감 53.7㎡) • 도 로 : 170.7㎡ 	지적확정 측량결과 반영포함

※ 유치원1용지 진입보도 위치 변경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변경

- 당초 교통개선대책 종합개선안도의 유치원1용지 우측 진입보도 2m 중 1m가 초등학교 측 (초등학교 이용불가)으로 확보되어 유치원1용지 및 보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보도 위치 변경(토지이용계획 변경 없음)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종합개선안도			
변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측 : 녹지내 보도 1m, 도로내 보도 1m • 좌측 : 녹지내 보도 1m, 도로내 보도 1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측 : 도로내 보도 2m • 좌측 : 녹지내 보도 2m 	

※ 내곡지구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 반영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변경

- 내곡지구 택지조성공사(2018.05.준공) 시 시행한 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 등) 심의결과 반영을 위한 교통개선대책 변경(토지이용계획 변경 없음)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경미한변경 사항 검토

■ 공공주택 특별법 17조(지구계획 승인 등)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려면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구계획의 변경**(제34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검토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변경은 제외한다) **이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17조(지구계획 승인 등)

- ⑤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지구계획의 변경(제34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검토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변경은 제외한다)이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구계획을 변경**(법 제34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검토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 공공주택 특별법 3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제3항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4.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7. 「학교보건법」에 따른 시·도학교보건위원회

→ 금회 지구계획 변경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34조3항 2호~7호의 위원회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지구계획 변경으로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함**